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1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4.

발 의 자: 박홍근ㆍ허 영ㆍ우원식

서영석 • 진성준 • 이원택

남인순 · 이정문 · 김승남

정필모 · 안민석 · 이학영

이규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 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 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
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 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~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%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, 국민의 73% 가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.

국회와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%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,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임.

이에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

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%에서 70%로 확대하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%,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소득세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임대료 인하액의 70%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(안제96조의3제1항).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%,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(안 제96조의3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자"를 "자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임대업자"라 한다)"로, "2020년 6월 30일"을 "2021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7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사업장(해당 상가건물의 사업장에 한정한다)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조치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- 1.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 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----자(이하 이 조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에서 "부동산임대업자"라 한다)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-----2021년 12월 31일---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가"이 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-----100분의 70---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신 설>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사업장(해당 상가건 물의 사업장에 한정한다)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임차인으로 부터 공제기간 중 인하하여 지

급받는 경우에는 그 조치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1.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: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: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인하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

③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
② ~ ④ (생 략)